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4. . . (제 회)	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박상우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4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도시 공간·거주·품격 3대 혁신방안」(’24. 3. 19) 후속조치로 노후된 저층주거지에 용적률 완화를 통해 주택정비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용적률 완화(안 제46조)

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된 중·저밀 주거지역에서 단독주택,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 등을 건축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법령 상 용적률의 최대 한도의 120퍼센트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음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전

3) 행정규제 : 규제심사 대상 사전검토 요청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6조에 제1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⑮ 법 제29조에 따른 도시·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주거지역(제30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 (1)·(2)에 해당하는 주거지역을 말한다)에서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(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호 및 제2호 나목·다목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)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제8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6조(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) ① ~ ⑭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46조(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) ① ~ ⑭ (현행과 같음) <u>⑮ 법 제29조에 따른 도시·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주거지역(제30조 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 (1)·(2)에 해당하는 주거지역을 말한다)에서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(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호 및 제2호 나목·다목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)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제85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.</u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1 - 3718